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출)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시·도지사가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때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함(안 제5조의6제1항제5호).

II. 검토의견

- 현행법 제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시·도지사는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계열화사업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서 제5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위반행위(부작위)의 정도가

중하면서도 그 요건에 불확정 개념이 없어 그 위반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임.

- 그런데, 안 제5조의6제1항제5호는 불확정 개념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여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시·도지사의 재량 혹은 판단여지가 발생함.

그럼에도 개정안과 같이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제5조의6제1항제5호의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도지사가 의무적으로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와 배치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안 제5조의6제1항제5호의 요건을 위반할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과 같이 등록 취소, 영업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재량규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등록의 취소)¹⁾ 제1항제5호 역시 불확정 개념인 ‘정당한 사유’가 포함되어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요건을 위반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설계·시공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위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아래와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등록의 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설계·시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营业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

같이 수정의견을 마련함.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제5조의6(등록 취소 등) ① 시·도지사는 제5조의3에 따라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u>제5호</u> 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5조의6(등록 취소 등) ① (현행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 단서와 같음)	제5조의6(등록 취소 등) ①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제6호</u> _____ _____ _____.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1. ~ 8. (개정안과 같음)
5. <u>등록 후 6개월</u>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5. <u>등록 후 정당한 사유 없이</u> -----	

현행	개정안	수정의견
6개월 이상 계속 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 ----- ----- -	
6. ~ 8. (생략)	6. ~ 8. (현행과 같음)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 음)	②·③ (개정안과 같음)

(전문위원 최 기 도)